

(검토보고서-참조1)

#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 (하는 것이 좋은가? 안 하는 것이 좋은가?)

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전반 또는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이 질문은 『안전심사 과정에서의 질의』와 달리 하나의 안전이므로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상정시켜 진행하게 된다

### □ 그 동안의 추진 사항

#### ○ 지금까지의 우리시 의회의 시정질문은

-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여 왔음.

#### ○ 2003년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토론사항으로

- 우리시 의회 시정질문과 답변하는 방식을 일문일답 식으로 바꾸어 보자는 논의가 있었음.

#### ○ 국회의 경우 국회법제1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2003년 2월 10일 대정부 질문시 적용.

- 국회법 제122조의2 제2항 및 제3항·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함
- ② 대정부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,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(당초15분)을 초과할 수 없다.  
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③ 의제별 질문 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⑥ 「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」 48시간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#### ○ 지방자치단체중 부천시의 경우 2003년부터 보충질문의 경우에 한하여 “일문일답” 방식을 택하고 있음(회의규칙 개정하지 않음)

## □ 일문일답식 장·단점

### ○ 장 점

- ①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 최소화
- ② 전문성이 있는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음

### ○ 단 점

- ① 시간이 많이 걸림
- ② 질문에 핵심이 없거나 답변 수준에 질문이 못미칠 경우 시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대두될 수 있음

## □ 질문·답변 사례

| 방 법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 법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 법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 법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괄질문 일괄답변 (대부분의 기초의회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</li> <li>• 보충질문의 경우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</li> <li>• 보충질문을 한 다음 4~5일후 답변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와 시차를 둬</li> </ul> <p>(부천시 2003년부터 시행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문일답 (보충질문 없음)</li> <li>•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48시간전에 정부에 송부</li> </ul> <p>(국회가 2003년부터 시행)</p> <p>※ 본안의 경우 회의 규칙 개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고</li> <li>•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일문일답의 시정질문도 할 수 있는 혼합형</li> </ul> <p>※ 본안의 경우 회의 규칙 개정</p> |

## □ 안전처리 절차(개정할 경우)

-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볼 수 없으며, 안전을 정식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안전으로 상정 의결하여야 함.

## 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

제66조의2(집행부에 대한질문)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(이하 "시정질문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④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제67조(시장에 대한 서면질문) ①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.

②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하여야한다.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 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제 2 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.

제68조(시장등의 발언)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7 장 사직과 자격심사

제69조(사직)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.

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 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

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)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징계